#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5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김용민・이수진・오영환

문정복・윤영덕・설 훈

김승원 · 윤미향 · 송재호

박 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 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 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

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 2년까지로 연장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 법률 제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2018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5항 중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을 "2018년"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제12조제1항제1호의2"를 "제11조제1항제5호의2"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지 정비사업)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 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 (2018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에 시행할 수 있다. 하정하다)-----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 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례) ① -----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 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 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 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 제2조(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 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 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 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u>2</u>	<u>018</u>
<u>년</u>	
<u>2022년</u>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호의2-----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 및 제 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

② (현행과 같음)